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5.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일, 김용민의원 등 25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2025.5.2.) 상정·제안설
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5.7.) 상정·축
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5.5.7.) 상정, 소위원
회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김용민의원)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6조 제6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퇴임일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취지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여 법해석의 충돌을 방지하고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임.

개정안은 재직 중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불소추특권의 취지를 고려하여 불소추특권이 공소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것인지, 헌법 제84조가 문언상 “소추”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소제기 단계에 한정된다고 볼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공판절차 정지 규정의 적용 시점을 헌법상 ‘재직중’이라는 문구에 비추어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로 할 필요성은 없는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

4. 대체토론의 요지

헌법 제84조의 취지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인 반면 개정안은 재직과 관계없이 저지른 범죄까지 무제한 범위를 확장하게 됨. 미연방 대법원은 대통령 재임 중 직무행위 이외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를 하였음. 특정후보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처분적 법률로 바람직하지 않음(유상범 위원).

헌법재판소 반대의견은 헌법 제84조 “소추”의 의미에서는 “소추”에 공소제기, 공소유지, 항소제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김기표 위원).

개정안은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에 저촉됨(장동혁 위원).

개정안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법에 명문화 시키려는 것임. 대통령의 취임 전 범죄에 대해 취임 후 재판 처리절차에 대한 견해대립이 존재하고, 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항에 따르는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존재함. 또한,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제목으로 하며 공소의 수행도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김용민 위원).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승원)

헌법 제84조의 내용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고,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당선인 확정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공판절차 정지의 대상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를 추가하고, 피고인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공판절차가 정지되지 않도록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의결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5.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공판절차 정지의 대상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를 추가하고, 피고인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공판절차가 정지되지 않도록 수정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0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이 확정된 때까지

2.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종료시까지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第306條(公判節次의 停止) ① ~ ⑤ (생략) <u><신 설></u>	第306條(公判節次의 停止)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u>	第306條(公判節次의 停止)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u>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u>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이 확정된 때까지</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u>	<u>2.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경우:</u> <u>당선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종료 시까지</u>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u>제 2 조 (공 판 절 차 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u> <u>제 306조 제 6 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u>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이 확정된 때까지
2.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종료시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306條(公判節次의 停止) ① ~ ⑤ (생략) <u><신설></u>	第306條(公判節次의 停止)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이 확정된 때까지</u> <u>2.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시까지</u>